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전 행심2020-6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3. 23.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등』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중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9. 12.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같은 학교 학생인 ●●●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2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학생 4~5명과 무리지어 친하게 어울렸는데, 피해학생이 무리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리중 한명씩을 순차적으로 따돌림 당하게 했는데, 청구인도 피해학생의 심한 장난을 받아주지 않았던 일로 따돌림 대상이 된 일이 있었고, 5학년 말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유튜브 계정으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청구인의 유튜브 계정 동영상목록을 캡처하여 올려서, 청구인이 음란동영상을 보는 아이라고 낙인찍히게 했으며, 청구인은 □□□□중학교에 진학후 초등학교 때 따돌림 당한 기억 때문에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지만,집이 가깝고 자주 마주쳐서 어울렸는데, 1학년 때 학교 친구로부터 "피해학생이 청구인이 초등학생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말을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듣고서 너무 속상하고 유포자가 피해학생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나.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초등학생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소문을 유포한 적이 있는지 추궁하여, 청구인은 과거 피해학생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토로하면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며칠 후 모르는 남자 육요요(고3)가 청구인에게 "●●의 친한 오빠"라며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학생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지인 ◇◇◇에게, ◇◇◇이 남동생 ◆◆◆에게, ◆◆◆이 후배 요요요에게 순차적으로 청구인을 협박하도록 교사한 것이고, 피해학생과 그어머니가 청구인의 연락처를 순차 전달해서 고3 남학생이 청구인에게 연락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며,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피해학생은 자신의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청구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것이고, 피해학생은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서2019. 12. 26.경 육육육 학생과 공동으로 청구인의 옆구리를 때려서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보복행위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의 변명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 만, 청구인이 게시한 것은 청구인 본인이 말한 부분이지 피해학생이 말한 부분은 전혀 게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부터 괴로워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본인의 독백처럼 올린글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친구만 24시간동안 열람할 수 있는 글로 피해학생이 특정되거나 추측되는 메시지가 전혀 없어서 게시글이 피해학생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청구인이 해당스토리에 게시하지 않은 내용까지 청구인이 게시하였다고 허위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라. ASK 익명질문 어플에 관해서도,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 겪은 학교 폭력에 관한 질문을 익명인에게 여러 차례 받았고, 익명인이 집요하 게 계속 '###가 왕따 주도라는 거지?'라는 등의 질문을 하여 청구인의 대답에서 피해학생 이름이 나오도록 유도하였고, 강요받은 청구인이 '엉'이라고 대답을 한 것뿐으로,

'###'라는 자음만으로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출한 자는 익명의 질문자이지 단순 히 대답만한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은 위 질문 어플을 신고하여, 청구인조차 열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학생이 해당 익명질문 캡처사진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는 해당 질문이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으로부터 교사 받은 자가 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로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단어를 발언하거나 동의를 받게 하도록 오히려 청구인에게 사이버테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자치위원회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에게 '모두 잘못이 있으니 화해 하라'라며 같은 처분을 내렸으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이사건 처분의 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청구인과 가해자인 피해학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지속적인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피해자이고,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발설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일방적인 학교폭력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해학생이 초등학생 때 같이 어울리던 무리에서 따돌림을 선동하고 명령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 또한 초등학생 때 해당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음란물 영상에 관련된 기억은 두 학생의 주장이 다른데, 본교에서는 두 학생의 전혀 다른 주장에 대해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초등학교 때 일을 판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 나. 피해학생 및 그 어머니, 지인들에 의한 협박 및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학생의 측은 절대 청구인에게 협박을 하려고 한 행동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두학생의 페이스북 대화를 보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피하고, 상대방에게 입장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옆구리를 가격 또는 보복성 구타를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교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신체접촉이었고, 피해학생도 당시 청구인과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조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였다고하며 청구인과의 부딪힘이나 접촉을 느끼지 못했고, 만약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의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한 이유를 '자신

의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 추측일 뿐이며,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행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서 조치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말한 부분은 전혀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해학생과의 1:1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에게시한 글을 보면,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고, 피해학생의 이름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이 해당게시물을 보고 이를 캡처하여 피해학생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미루어보아, 충분히 누구와 관련된 내용인지 유추 가능해 보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공개하였기에파급력이 커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바, 사이버를 통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라. 피해학생은 이 사건으로 학교생활 중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듯한 심리적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아정체성 및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3. 1.자로 전학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청구인은 조치 결과에 대한 처분 취소의 이유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근거로 상대학생의 잘못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피해학생과 청구인 간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각 제출서류,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및 피해학생 측 각 진술, 청구인 및 피청구인 각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2019. 11. 17.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혹시 내가 학폭 했었다고 친구들한테 말한 적 있어?'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1. 20.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때 있었던 따돌림 등 학교폭

력 관련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2019. 11. 21. 청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2019. 11. 20. 피해학생과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게시하였고, 청구인은 ASK라는 익명질문 어플에서 익명의 제3자가 '###가 왕따 주도라는 거지?'라는 질문을 받고 '엉'이라고 답을 하였다.

- 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및 ASK 익명질문 어플 글에 피해학생이름 '●●●'가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특성상해당 글을 주변 친구들이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른 중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및 ASK 익명질문 어플 글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청구인에게 따돌림 등 가해행위를 했었고, 중학교 진학 후 1학년 때도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허위소문을 유포했으며, 피해학생 및 그가족, 지인들에 의한 협박 및 폭행을 당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초등학생 5학년 때 일어난 일에 관해서는 두 학생 간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도 불분명해서 피청구인 측이 판단하기에는 적정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때 들었다는 소문에 관하여도 청구인은 사실 확인 없이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단절만 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고 ASK(익명질문)어플 답글을 한 후에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 지인으로부터 협박,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아니며, 피해학생은 자신이 한 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처분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함에도, 상대방 피해학생의 가해행위만을 부각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이유 없다.

2) 청구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본인이 말한 부분만 게시했고, 피해학생 이름 '●●●'가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며, 친한 몇몇 친구들만 열람할 수 있어서 공연성이 없고, ASK 익명질문 어플 글도익명인이 집요하게 '###가 왕따 주도라는 거지?'라는 질문해서'엉'이라고 대답을 한 것뿐으로, '###' 자음만으로 피해학생을 특정되지 않고 특정된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을 노출한 자도 청구인이 아닌 익명의 질문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해학생과의 1:1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페이스북 스토리에 올린 게시글을 살펴보면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페이스북 스토리 게시글 및 ASK 익명질문 어플 글에 피해학생의 이름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이 해당게시물을 보고 이를 캡처해서 피해학생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미루어보아, 충분히 누구와 관련된 내용인지 유추 가능해 보이며, 청구인의 페이스북 상 열람가능 한 친구가 251명에 이르고,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으로 그 파급력이 커서 공연성 문제로, 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ASK(익명질문)어플 답글은 사이버를 통한 학교폭력에 해당 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살피건 대,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면서, 사이버상 파급력을 고려해서 심각성 1점, 고의성 0점, 피해학생과 화해시도가 전혀 없으므로 화해정도 4점, 자신의 피해부분만 주장하고 피해학생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부족하여 반성정도 1점으로 산정해서,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총 6점의 점수를 산출하였지만, 청구인에게 충분히 선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처분을 경감하여 서면사과 등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결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피청구인이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